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04호 2021. 10. 25.(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1-167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358호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재공고	4
남해군 공고 제2021-1360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10
남해군 공고 제2021-1365호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3
남해군 공고 제2021-1366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15
남해군 공고 제2021-1367호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	17
남해군 공고 제2021-1383호 2021년 제3회 남해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23
남해군 공고 제2021-1389호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	30
남해군 공고 제2021-1390호 남해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남해군 공고 제2021-1394호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 공람공고 ..	42
남해군 공고 제2021-1395호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 승인 공고	45
남해군 공고 제2021-1397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46
남해군 공고 제2021-1407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2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임포천(지방하천)
2. 성 명 : 유한회사온누리(최장0)
3.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4. 점용목적 : 진입로 및 배수관로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1252(718-1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11 m²
7. 점용기간 : 2021. 10. 19. ~ 2025.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1-16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21-5 외 20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4~3642)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0.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고지일련번호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부여사유	고지일련일
1487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48-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21-5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0210829
14872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수산리 277-5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장선로66번길 17-1	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29
1485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12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695번길 48-19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28
1485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5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118번길 13	봉화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28
1483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00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159-5	행정구역명을 이용, 배를 만들던 곳, 신선들이 사는 땅을 의미함	20210823
1483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5-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983-17	남해군의 동부대로	20210823
1481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50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2968번길 44-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16
1481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90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107	초곡(초원의 골짜기)과 초양(초원의 양지쪽)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20210816
14791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상주리 724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남해대로688번길 32-1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16
1479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70-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129	남해군의 중심도로	20210816
1477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9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30번안길 16	동부대로 1030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20210810
1477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무의리 85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775번길 26-4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10
1477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89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105번길 35-11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10
1475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56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356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0210810
1473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번리 107, 105-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35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조성되는 녹색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20210810
1473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전소리 31-3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전소리 186-6	행정구역명을 이용, 배를 만들던 곳, 신선들이 사는 땅을 의미함	20210807
1473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1063-1, 1062-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222-8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0210807
14731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가인리 591-1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홍선로 447-39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장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20210806
14713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동대리 117-5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동부대로 2757-64	남해군의 동부대로	20210802
147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6-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132-33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02
147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6-17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132-31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0802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358호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재공고

제28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민대상 조례」 및 「남해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 1. 시상시기 : 제28회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2021년 군민의 날 기념식)
- 2. 시상대상
 - 가. 사회봉사·효행
 - 나. 산업경제
 - 다. 교육·체육
 - 라. 관광·문화예술
 - 마. 환경·보건
- 3. 시상인원 : 부문별로 1명을 시상 원칙(대상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아니함)
- 4. 수상자의 자격 : 군민의 공지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 5. 후보자의 추천
 - 가. 후보자는 소속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
 - 나. 추천 시 제출서류
 - 추 천 서 1부(소정양식)
 - 공적조서 1부(소정양식)
 - 이 력 서 1부

-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정보 제공이용 등 동의서 1부(소정양식)

다. 추천기간 : 2021. 10. 8. ~ 2021. 10. 14.(6일간)

라. 제출처 및 제출방법 : 군민대상심사위원회 방문제출(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7. 수상자 결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 가. 수상대상자는 남해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상은 상패를 수여한다.
-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8. 수상자의 특전 : 행정지원의 우선권 부여 등 편의 제공

9. 기타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055-860-3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계 급	
추천훈격	남해군민대상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조 사 자

소 속			
직 위(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	-----	-----

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공적 내용	
<p>○주요 공적 사항</p> <p>-</p>	

2021년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 개인정보 제공(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동의서

인적사항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2021년도 남해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의 신원,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수상후보자의 개인정보 등 이용 동의

기타 동의

- 남해군 홈페이지에 수상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공적사항 공개에 동의하며 향후 군민대상 후보자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남해군민대상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 되어 군민대상 수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1년도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될 경우
위와 같이 동의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주소

성 명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공고 제2021-1360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92호	패류양식 (바다식)	피조개	이동원천	50,000	2021.10.08 2031.10.07 (10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원천어촌계	192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93호	패류양식 (바다식)	새꼬막	이동 초음	50,000	2021.10.07 2031.10.06 (10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번길 19	강철호	193호 재개발

※ '21/22년 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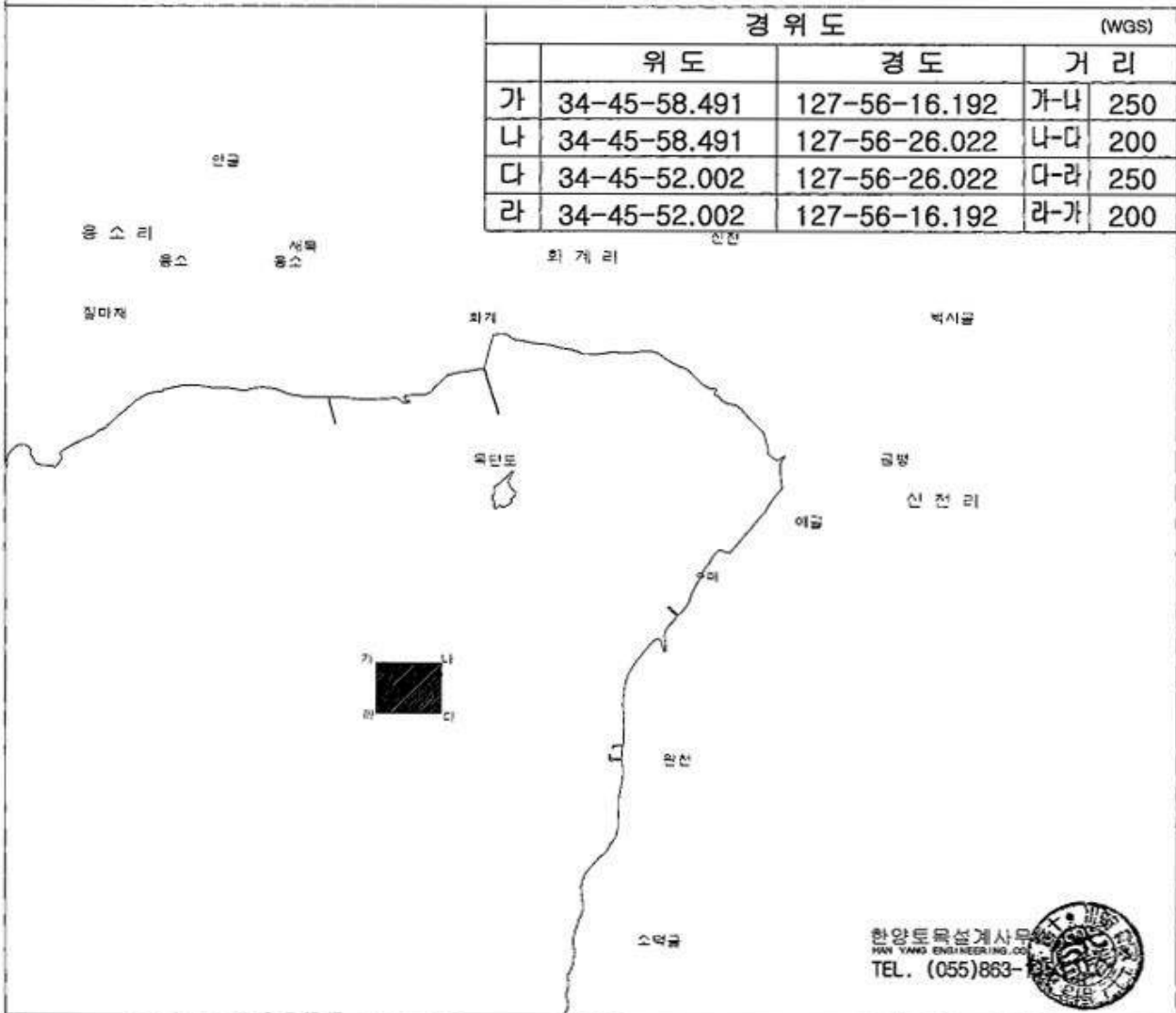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92호	패류양식 (바다식)	피조개	이도원천	50,000	2011.10.08 2021.10.07 (10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원천어촌계	
남해양식 제193호	패류양식 (바다식)	새꼬막	이동초음	50,000	2011.10.07 2021.10.06 (10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번길 19	강철호	

592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46-10.39, E127-57-05.0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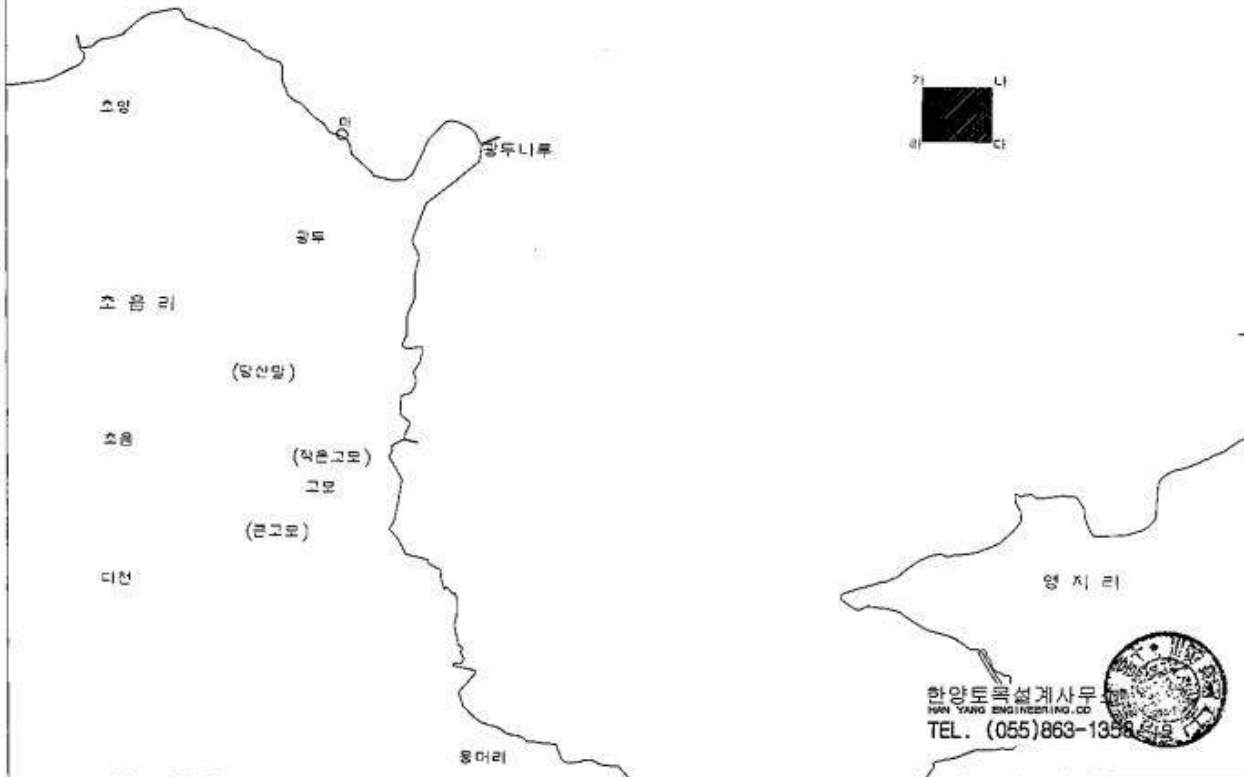
한양토목건축계사무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

593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49-44.511, E127-56-19.97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49-50.864	127-57-42.762	가-나	100
나	34-49-50.864	127-57-52.600	나-다	100
다	34-49-44.374	127-57-52.600	다-라	100
라	34-49-44.374	127-57-42.762	라-가	1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8



남해군 공고 제2021-1365호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년 ~ 2023년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삼동면 봉화리 산366-6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 L=230m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1. 10. 15. ~ 2021. 10. 29.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10. 15. ~ 2021. 10. 29.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성명
				(㎡)	편입면적 (㎡)		
1	삼동면 봉화리 산366-9	도	도	2,714	1,697	00	남해군
2	삼동면 봉화리 산366-6	임	임	19,104	2,502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남길 00	김중오
3	삼동면 봉화리 산368-1	임	임	25,761	1,976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정로 00	김승오
4	삼동면 봉화리 1279	도	도	2,642	266	00	남해군
5	삼동면 봉화리 1275-4	도	도	286	89	00	남해군
6	삼동면 봉화리 산368-2	도	도	198	198	00	남해군
7	삼동면 봉화리 1275-2	도	도	53	5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00	신주오
8	삼동면 봉화리 1275-3	도	도	523	254	00	남해군
9	삼동면 봉화리 산368-3	도	도	24	24	00	남해군
10	삼동면 봉화리 2185-5	도	도	2,183	504	00	국토교통부
계				53,488	7,563		

남해군 공고 제2021-1366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삼동면 봉화리 산366-6번지 일원

2. 출입기간 : 2021. 10.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삼동면 봉화리	산366-9	도	2,714	1,697	00	남해군
2	삼동면 봉화리	산366-6	임	19,104	2,502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남길 00	김중0
3	삼동면 봉화리	산368-1	임	25,761	1,976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00	김승0
4	삼동면 봉화리	1279	도	2,642	266	00	남해군
5	삼동면 봉화리	1275-4	도	286	89	00	남해군
6	삼동면 봉화리	산368-2	도	198	198	00	남해군
7	삼동면 봉화리	1275-2	도	53	5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00	신주0
8	삼동면 봉화리	1275-3	도	523	254	00	남해군
9	삼동면 봉화리	산368-3	도	24	24	00	남해군
10	삼동면 봉화리	2185-5	도	2,183	504	00	국토교통부
계				53,488	7,563		

남해군 공고 제2021-1367호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경상남도과 남해군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0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범사업)
- 사 업 비: 770천원 (도비 4,230천원, 시비 9,870천원)
- 사 업 량: 5가구
- 사업기간: 2021. 8. 23.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2.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남해군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신혼부부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19. 10월 ~ '21. 12월 (보증 갱신일 포함)
- * 미가입자는 가입 후 신청 가능
- *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 보증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3.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2021. 8. 23.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신청·접수(신청인→읍·면)⇨대상자 결정(군)⇨통보·지급(군→신청인)

5.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순차적 지원**
- 지원 신청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 불가
-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혼자는 부부합산)
 - '21년 1~3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3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맞벌이 가구일 경우 합산 산정)
 - 신청인 및 배우자 외 건강보험료 별도 합산하지 않음
 - 신청인이 미혼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0~2021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방문발급만 가능하므로 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6.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발 행 처
①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처(읍·면사무소)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가입기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④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0~2021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정보24(인터넷 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1~3월 고지금액 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가능)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⑧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⑨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⑥, ⑦ 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 혼	가입자	○	○	×
	피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
기 혼	외벌이	가입자	○	×
		피부양자	×	○
	맞벌이	가입자	○	×
		가입자	○	×

7.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경우 회수 조치합니다.
-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득판정을 위하여 신청 이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860-3490)

[별지 제1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주 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남, 여)
	전세보증금		면적(m ²)	
	주택종류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계약기간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위 동의 미체크시 신청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8. 혼인관계증명서 1부.(기혼자) 	주민등록표 등본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증가입 중도 변경·해지 확인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신청인 보증가입 기간만료 후 1년간 보유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가입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중도 변경·해지 확인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이용목적 확인 시점까지

본인(신청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환수조치 동의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후 보증가입 중도 변경·해지로 정산되는 보증료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자진반납 하지 않을 시 환수 조치하는데 본인(신청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청렴 이행 확인서

우리 단체(개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남해군의 청렴이행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남해군이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개인)는 물론 단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남해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구분	1.보조사업자	2.대리인
성 명 :	(인)	
전화번호:		
이메일 :		

※ 2번은 있는 경우만 작성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383호

2021년 제3회 남해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 제3회 남해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직 무 내 용
안전관리자 (행정지원담당관)	시간선택제임 기제(라급)	1명	2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업무와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사무
보건관리자 (행정지원담당관)	시간선택제임 기제(라급)	1명	2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업무와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사무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연 령 : 만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결격사유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안전관리자	<p>[경력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p>※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p> <p>[자격보유요건](필수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p>※ 관련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p>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보건관리자	<p>[경력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p>※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 등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경력(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p> <p>[자격보유요건](필수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함.

4. 채용조건

-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주당 32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보수수준

구 분	연봉액(천 원)		보 수	근 무 시 간	비 고
	상 한 액	하 한 액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43,987	31,370	하한액	주당 32시간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43,987	31,370	하한액	주당 32시간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유선 통보)
 -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021. 10. 26.~ 2021. 10. 28.	서류전형	-	2021. 11. 01.(예정)
	면접시험	2021. 11. 04.(예정)	2021. 11. 05.(예정)

* 면접시험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연락 바람 (055-860-3113)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구 분	내 용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필 기재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분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3)
 - 업무관련 문의(안전 및 보건관리자) :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5)

남해군 공고 제2021-1389호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2.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 : 조례 제정 목적
- 나. 안 제2조 : 정의(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 사업자)
- 다. 안 제3조, 제5조, 제9조 : 군수의 책무, 안전교육 및 이용환경 개선
- 라. 안 제6조 : 무단방치 금지 등
- 마. 안 제7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 바. 안 제8조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11월 5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2, 팩스 055-860-3708
- 3) 메 일 : ruidie@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860-3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구역 조성)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 보호 장구 착용
- 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
-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시속 25킬로미터) 점검

- 3.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 확보·운영
-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 6.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
- 2.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1390호

남해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체육진흥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위임 사항 정비
 - 체육진흥에 관한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 및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가.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해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 장려하고 지원
 - 나. 제3조(책무)
 -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시책 수립·시행
 - 다. 제4조 ~ 10조 체육의 진흥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직장체육,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라. 제11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마. 제14조 ~ 제20조 남해군 체육진흥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협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의장 등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제21조 ~ 제24조 보칙

- 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포상,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 등에 관한사항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82, 팩스 055-860-8661
- 3) 메 일 : ruidie@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860-868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해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남해군의 체육 진흥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 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방문전지훈련단 유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선수와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동호인 육성 및 지원
6.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4. 노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 2. 학교체육활동 우수 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과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
 -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직장체육 육성 및 지원
 - 2. 그 밖에 군수가 직장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스포츠클럽의 진흥)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 2.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 2. 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 3.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 4.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 5.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남해군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 2. 사무시설 임차료
 - 3. 공과금 등 관서운영 기본경비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제13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체육진흥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3. 군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남해군체육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9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체육단체 운영에 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제23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 군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1394호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 3.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조
-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840번지 일원	-	증)44,149	44,14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A = 44,149㎡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금회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나.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	550	8,509	-	-	-	1	550	8,509	-	-	-
소로	1	550	8,509	-	-	-	1	550	8,509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A	9	국지 도로	550	남해읍 평현리 1938-3	남해읍 평현리 1856	일반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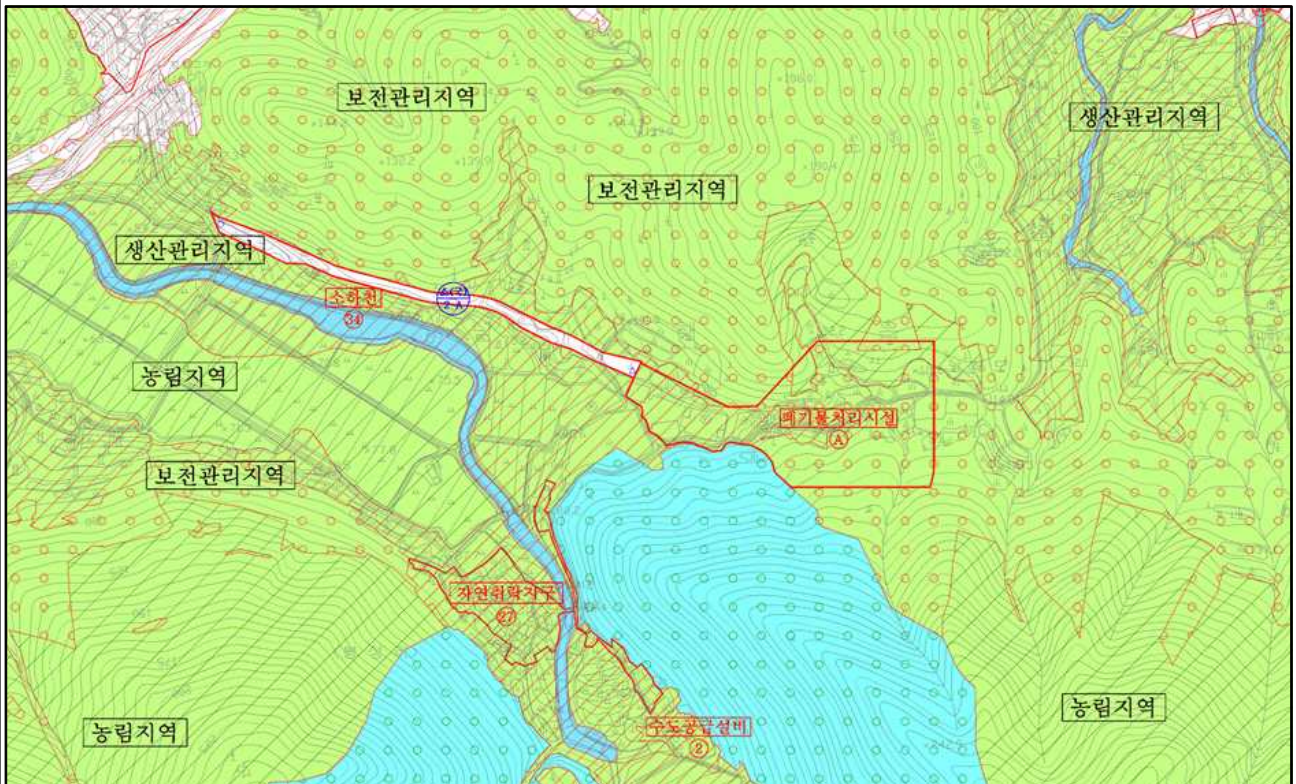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A	◦노선신설 B = 9m, L = 550m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를 조성하고자, 금회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붙임2> 위치도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도



남해군 공고 제2021-1395호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 승인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1. 공고목적 :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 결정(변경)” 승인 사항
2. 주요내용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계획인구 : 44,000인
 - 계획면적 : 358.485km²
 - 미 래 상 : 활력있는 글로벌 관광 힐링의 메카 남해
 - 공간구조 : 1지역중심, 1지구중심
 - 부문별계획 등 기타내용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2021. 10. 18. ~ 2021. 11. 17.
4. 열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5.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1-1397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남 해 군 수

1. 조례명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4조 ~ 안 제5조)
- 서비스 제공기관(안 제6조)
- 지원 신청 등(안 제7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8조 ~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11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7,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전화 055-860-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이 및 보호자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연령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비 고
첫째·둘째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	50%	
	나		50%	
	다		50%	
	라		50%	
셋째아 이상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	-	100%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비스 이용 대 상 자	신 청 인 과 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 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연 락 처	자 택		휴 대 전 화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 육 공 백 유 형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 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 공고 제2021-1407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2.1.13.시행)으로 군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 조례안 및 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4조제2항·제3항 단서, 안 제17조)

나. 군민의 규칙 제정 및 개정·폐지 등에 관한 의견제출(안 제18조)

다. 의견제출 제외대상(안 제19조)

- 라.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 마. 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바. 의견의 반영(안 제23조)

4. 조례안 : 불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행정지원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우52425)
- 2) 전 화 : 055-860-3058, 팩스 : 055-860-3737
- 3) 전자우편(이메일) : sujino7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전화 055-860-3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민”을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등”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군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군수는 군민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0조(의견제출 방법) 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제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의견제출 검토·처리)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23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24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군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u>군수</u>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입법내용이 <u>군민의 권리·의무</u>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u>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p>1. ----- <u>남해군민(이하 “군민”</u>----- <u>이라 한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이 <u>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u>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u>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u> <u>군의회에 제출할 때</u> 첨부할 수 있다.</p>	<p>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 ----- -----.</p> <p><단서 삭제></p>
<p>제16조(공포일 등)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가 게재된 군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u>군의회 의장이</u>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p>	<p>제16조(공포일 등) ----- -----</p> <p>-----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6항 ----- -----.</p>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등

제17조(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삭 제>

제18조(군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군수는 군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

제20조(의견제출 방법) 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제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견제출 검토·처리)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8조 · 제19조 (생 략)</p>	<p><u>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 용인 경우</u></p> <p>③ <u>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 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 입하지 않는다.</u></p> <p><u>제23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 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u></p> <p><u>제24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군민 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 다.</u></p> <p><u>제25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 수해야 한다.</u></p> <p><u>제26조 · 제27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 와 같음)</u></p>
---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단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지원담당관 김 성 근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2022.1.13.시행)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 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